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 모투자신탁 추가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 2016.12.8

4.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1) 주요 정정 내용

<table>
<tr><th>구 분</th><th>정정 전</th><th>정정 후</th></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일 기준 업데이트)</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투자구조

다. 모자형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밸류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70% 이상</td></tr></table></td><td>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투자구조(그림변경)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삽입

다. 모자형 구조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밸류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70% 이상</td></tr></table></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td><td>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td><td>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td></tr>
</table>

<table>
<tr>
<td>에 관한 사항</td>
<td>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①하나 UBS 밸류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90% 수준(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함)</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td></tr>
<tr><td>②유동성자산</td><td>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40% 이내로 하며, 이 경우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율은 60% 이상)</td><td>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td></tr>
</table></td>
<td>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①하나 UBS 밸류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아이비리그 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70% 이상</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td></tr>
<tr><td>②유동성자산</td><td>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40% 이내)</td><td>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td></tr>
</table></td>
</tr>
<tr>
<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td>
<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td>
</tr>
</table>

<table>
<tr><td></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td><td>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추가>
(2) 투자제한
<추가></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1)투자대상
<별첨1 참조>
2)투자제한
<별첨2 참조></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밸류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90% 수준</td></tr></table>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신설></td><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밸류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70% 이상</td></tr></table>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별첨3 참조></td></tr>
</table>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신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년 12월 9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

		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생략)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생략, 현행과 동일)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신설>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정정 전</th><th>정정 후</th></tr>
<tr><td>I.
집합투자
기구의
개요</td><td>1. 투자전략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table><tr><th>모투자신탁명</th><th>투자목적</th></tr><tr><td><신설></td><td></td></tr></table></td><td>1. 투자전략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table><tr><th>모투자신탁명</th><th colspan="2">투자목적</th></tr><tr><td rowspan="2">하나 UBS 아이비리 그플러스 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td>주요 투자 대상</td><td>국내주식 60%이상, 채권 40% 이하</td></tr><tr><td>투자 목적</td><td>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td></tr></table></td></tr>
</table>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2) 투자대상

자 대상	
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동성자산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 대상	투자 비율
주식	80%이상
채권	20%이하
자산유동화증권	20%이하

2.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에의투자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90% 수준

(2) 투자대상

자 대상	
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동성자산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식	60%이상	80%이상
채권	40%이하	20%이하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20%이하
어음	40%이하	20%이하

2.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에의투자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UBS 밸류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70% 이상

	[모집합투자기구 투자전략] <신설>	[모집합투자기구 투자전략] **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집합투자기구] (1) 운용전략 □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2) 비교지수(Benchmark): **KOSPI 수익률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OSPI 수익률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집합투자규약]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나UBS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	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나UBS퇴직연금Balance 증권모투자신

명칭 등)	탁[주식]	탁[주식] 2.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 18 조 (투자대상 자산 취득한도)	1."하나 UBS 밸류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수준으로 한다.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항의 투자비율은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이하삭제)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6년 12월 8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 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 별첨1.**

- 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 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
2.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취득시 A3- 이상)
5.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30%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환매조건부매매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별첨2**

- 하나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적용예외 제외

별첨3

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집합투자기구]

(1) 운용전략

□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 Bottom-up Approach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In - 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2) 비교지수(Benchmark): KOSPI 수익률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OSPI 수익률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자집합투자기구]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